보건복지부	보 도 자 료 7월 1일(월) 조간 (6.30. 12:00 이후 보도)		
배 포 일	2019. 6. 28. / (총 6매)	담당부서	기초의료보장과
과 장	임 은 정	전 화	044-202-3090
담 당 자	김 도 균		044-202-3094

15세 이하 아동·장애인 의료급여 이용 절차 편리해진다!

-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·3차 의료기관 이용 확대 등 의료급여수급자 이용 불편 해소 -

□ **보건복지부**(장관 박능후)는 **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를 개선**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**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7월 1일(월)부터 시행**된다고 밝혔다.

○ 이번 법령 개정으로 1차 의료기관(의원)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**2차 의료기관(병원)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**하고, 이용시간대도 **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하지 않도록 개선**하였다.

- 이는 취학 아동이라도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, 이용시간대를 한정함에 따라 집 근처 2차 의료기관을 두고도 1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.

* 수혜대상 : 8세 미만 아동 수('18년) 4만 8000명 → 15세 이하 아동 수('18년) 14만 4000명, ↑9만 6000명

** 15세 이하 아동의 연간 의료급여 총 진료비 현황('18년) : 425만 건 1,409억 원

○ 또한,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때 **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** 2차 의료기관의 진료를 거치지 않고 **바로 이용**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- 이로써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인 부산·인천 지역 장애인 수급자(5만 6000명)의 경우 2차 의료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곧바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.

*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 수('18년) 43만 2000명,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이용자 수('18년) 1만 2000명

**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현황 : 10개소 (2차 의료기관 : 서울 등 8개소, 3차 의료기관 : 부산·인천 2개소)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

< 의료급여 이용 절차 개선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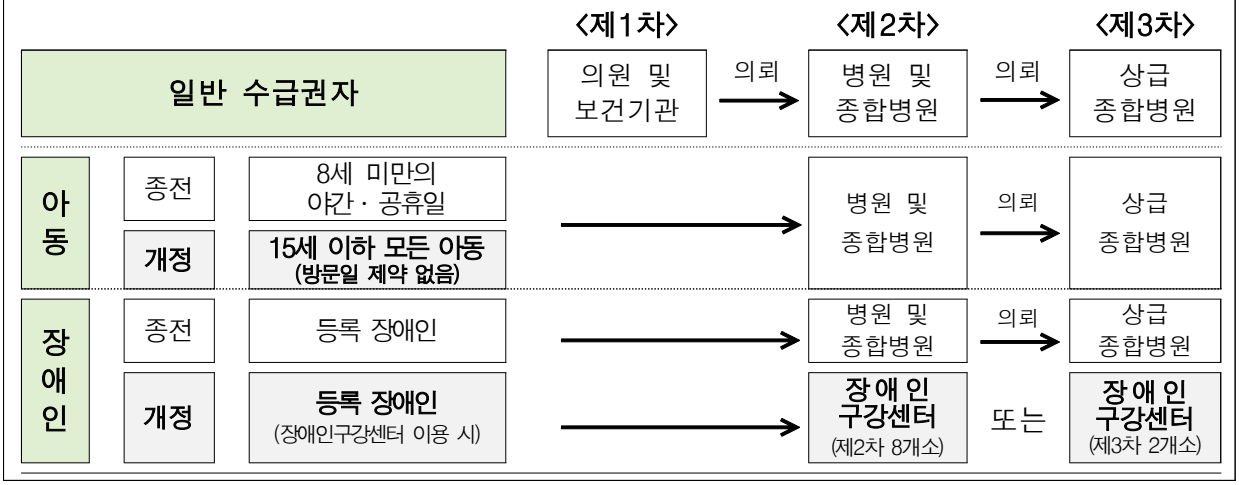

○ **아울러,**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 「장애인복지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**요양비지급청구서(산소치료), 장애인보장구급여 신청서·처방전 등 관련 서식을 정비**하였다.

○ 한편,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**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반드시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 다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도록 개정**하였다.

*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병원 진료 시, 전액 본인부담토록 하여 절차 준수 유도

□ **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**은 "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으로 아동과 장애인 등 **최소 20만 명의 의료급여의 이용이 개선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**하며, 앞으로도 **의료급여 보장성 확대와 함께 의료급여 이용의 접근성도 적극 개선**해 나갈 계획"이라고 밝혔다.

< 붙임 > 1. 달라진 의료급여 이용 사례(예시)
2. 의료급여 사업 개요
3.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현황 등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

붙임 1 달라진 의료급여 이용 사례(예시)

1. 8세 미만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의료수급자 (박○○)

6세 아동의 부모인 의료급여수급권자 박○○ 씨는 수요일 아침 복통을 호소하는 아이를 등에 업고, 집 앞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○○○아동병원으로 즉시 달려갔다.

종전에는 평일이기 때문에 버스로 두 정거장 떨어진 **동네 의원이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는데**, 이제는 의료급여 이용 절차가 개선되어 **언제라도 집 앞 아동병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.**

덕분에 박○○씨는 아이의 상태가 호전되는 것을 보고, 오전에 주문 받아 놓은 작업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.

2. 10세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의료수급자 (오○○)

두 아이의 부모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오○○씨는 둘째 아이(7세)가 며칠 전부터 기침을 심하게 해서 ○○아동병원에 다니던 중에, 첫째 아이(10세)마저 하루 전부터 감기 증세를 보이자 **첫째 아이도 둘째 아이가 다니는 ○○아동병원에 함께 진료예약**을 했다.

종전에는 첫째 아이의 병원 진료를 위해서 **동네 의원을 먼저 들러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후에라야 둘째 아이가 다니는 ○○아동병원에서 함께 진료**를 볼 수 있었는데, **이제는 의료급여의뢰서가 없어도 곧바로 병원에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**되었기 때문이다.

덕분에 하루 종일 의원과 병원을 오가며 보내야 했던 **대기시간이 절반으로 줄었다.**

3. 부산 거주 장애인 (김○○)

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의료수급권자 김○○씨는 어제 저녁부터 시작된 극심한 치통으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아침 진료를 예약을 했다. 종전에는 **차량으로 30분 정도 떨어진 치과에서 먼저 진료 후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은 후에라야 3차 의료기관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진료**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하지 않아 진료 받기가 한결 수월해 졌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

붙임 2 의료급여 사업 개요

□ **(사업 내용)**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질병, 부상, 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비 등을 지원

□ **(지원 대상)**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기준중위소득 40% 이하*인 자, 다른 법에 따라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

구분	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	국민기초생활보장법 외 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
1종	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된 가구 - 18세 미만, 65세 이상 - 4급 이내 장애인 - 임산부, 병역의무이행자 등	○ 이재민(재해구호법) ○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○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○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·가족 ○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○ 새터민(북한이탈주민)과 그 가족 ○ 5·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가족 ○ 노숙인 ※ 행려환자 (의료급여법 시행령)
2종	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	-

가구원 수	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의료급여 (기준중위소득 40%)	'18년(월/원)	66만8842	113만8839	147만3260	180만7681	214만2102	247만6523
	'19년(월/원)	68만2803	116만2611	150만4013	184만5414	218만6816	252만8218

□ **(지원 내용)**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

< 수급자 종별 본인부담 수준 >

구분		1차(의원)	2차 (병원, 종합병원)	3차 (상급종합병원)	약국
1종	입원	없음	없음	없음	-
	외래	1,000원	1,500원	2,000원	500원
2종	입원	10%	10%	10%	-
	외래	1,000원	15%	15%	500원

*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 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은 3%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

□ **(급여절차)**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용(3단계)

* (참고) 건강보험의 급여절차는 2단계(의원, 병원, 종합병원 → 상급종합병원: 42개)

<1단계>		<2단계>		<3단계>
의 원 보건기관 (보건소, 보건지소, 보건진료소) 보건의료원	의뢰 (의료급여의뢰서) → ← 회송 (의료급여회송서)	병 원 종합병원	의뢰 (의료급여의뢰서) → ← 회송 (의료급여회송서)	상급종합병원 ('17.3월부터)*

* 종전 제3차의료급여기관은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25개 병원이었으나, 의료전달체계의 합리성·일관성을 위해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상급종합병원으로 변경('17.3월)

□ **(의료급여 범위 및 비용)** 건강보험에서 고시하고 있는 급여 종류, 수가 및 급여 기준 준용 원칙

□ **본인부담 지원 제도**

○ **(1종 본인부담 면제)** 임산부, 18세미만, 희귀난치질환자, 중증질환자, 행려환자, 노숙인 등은 모든 진료(급여)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

○ **(건강생활유지비 지원)** 1종 수급권자(본인부담면제자 제외)는 매월 6천원(연 72천원) 지급받아 외래 본인부담금 납부에 사용, 잔액은 환급

○ **(본인부담 완화)** 본인부담 보상제 및 상한제 적용

* 본인부담금 보상제 선(先) 적용 후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

붙임 3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현황 등

■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현황 (‘18년 12월 말 기준)

No	지역	병원명	개소시기	비고
1	충남	단국대천안치과병원	‘11.01	2차의료기관
2	광주	전남대치과병원	‘11.05	2차의료기관
3	부산	부산대병원	‘12.04	**3차의료기관**
4	경기	단국대죽전치과병원	‘12.05	2차의료기관
5	전북	전북대치과병원	‘13.04	2차의료기관
6	대구	경북대치과병원	‘15.07	2차의료기관
7	강원	강릉원주대치과병원	‘15.12	2차의료기관
8	인천	가천대길병원	‘16.02	**3차의료기관**
9	제주	제주대병원	‘17.12	2차의료기관
10	중앙	서울대치과병원	‘19.01	2차의료기관

■ 전국 장애인 등록현황 (‘17년 기준)

시도	인구수	장애인 수	치과영역 중증 장애인	인구 대비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	장애인 대비 치과영역 중증장애인
전체	51,778,544	2,545,637	834,656	1.61%	32.79%
서울	9,857,426	391,753	126,630	1.28%	32.32%
부산	**3,470,653**	**171,384**	**58,427**	**1.68%**	**34.09%**
대구	2,475,231	119,766	40,615	1.64%	33.91%
인천	**2,948,542**	**138,304**	**43,543**	**1.48%**	**31.48%**
광주	1,463,770	69,233	23,402	1.60%	33.80%
대전	1,502,227	72,180	24,590	1.64%	34.07%
울산	1,165,132	50,205	15,452	1.33%	30.78%
세종	280,100	10,623	3,479	1.24%	32.75%
경기	12,873,895	533,259	173,198	1.35%	32.48%
강원	1,550,142	99,959	33,420	2.16%	33.43%
충북	1,594,432	95,844	32,672	2.05%	34.09%
충남	2,116,770	128,503	41,594	1.96%	32.37%
전북	1,854,607	131,303	44,292	2.39%	33.73%
전남	1,896,424	142,174	43,566	2.30%	30.64%
경북	2,691,706	172,533	57,217	2.13%	33.16%
경남	3,380,404	183,510	60,934	1.80%	33.20%
제주	657,083	35,104	11,625	1.77%	33.12%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